승환계약 규제에서의 비교안내 시점에 대한 검토

백영화 연구위원

요약

보험모집종사자는 ①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기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함)을 청약하게 하거나, ②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을 비교안내 해야 함. 비교안내를 해야 하는 시점과 관련하여 ①의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에 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데, ②의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에 해야 하는지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 시에 하면 되는지 해석상 다툼이 발생함.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기로 모집종사자가 유도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 중인 상태에서 이와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 신청이 있으면 그 때 비교안내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기존 보험계약이 유지 중이라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으면 해당 청약 시점에서 비교안내를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입장도 있음. 이처럼 승환계약 규제에서 비교안내 이행 시점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있고 실제로 이에 관한 제재 사례도 나오고 있으므로, 법 개정 또는 유권해석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부당한 전환(이른바 승환)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부당하게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로 하여금 ①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기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1]만 해당함)을 청약하게 하거나, ②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③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④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2]
  - 승환계약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금전 손실, 새로운 보험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 개시 등 부당한 손실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험업법에서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

1)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고,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한 경우를 말함(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2)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는 것임[3]

- 이러한 승환계약 규제와 관련하여 보험업법은 1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보험계약 전환에 대해 일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보험계약 전환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전환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당성에 대해서는 부당성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어떤 경우가 부당한 전환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험업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부당한 전환으로 간주함으로써 입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것임

〈표 1〉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간주 규정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③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간주 규정에 있어서 자필서명 등에 의한 본인 의사 확인 또는 비교안내를 언제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시점과 관련하여 해석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

- 기존 보험계약이 먼저 소멸되고 그로부터 1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자필서명 등을 받거나(1개월 이내의 전환의 경우) 비교안내를 해야 하는 것이(6개월 이내의 전환의 경우) 명확함
- 그런데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는 기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 중이었다가 그 후 1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소멸되는 경우에는 비교안내 등을 언제 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음[4]
  - 즉, ① 나중에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 시점에서 비교안내 등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② 기존 보험계약이 유지 중이라도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비교안내 등을 해야 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됨

■ 이에 대해서는 우선 기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비교안내 등을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음

3) 정채웅(2017), 『보험업법 해설』, p. 512

4) 1개월 이내의 전환의 경우에는 자필서명 등을 받아야 하는 시점, 6개월 이내의 전환 행위의 경우에는 비교안내를 해야 하는 시점이 문제됨. 이하에서는 "비교안내 등"이라는 표현으로 두 경우를 통칭하도록 함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유지 중인 보험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이와 유사한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비교안내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임[5]
- 과거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서도 "승환계약행위 금지의 원칙 및 간주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간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체결 시점에서 기존 유사한 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과 비교설명을 하고 기존 보험계약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지 그 의사가 명백한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6]

이와는 달리,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시점에서 비교안내 등을 하면 된다는 해석도 가능함

-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는 기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 중인 상태이고, 1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될지 여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 신청이 들어오면 그 때에 비교안내 등을 하면 된다고 보는 것임
-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에 해당하면 보험계약자는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7]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 시점에서 비교안내 등을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에게 더 불리할 것은 없다고 봄

보험업법의 문언과 체계에 따라 해석하면,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기로 모집종사자가 유도·추천·논의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 중인 상태에서 이와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나중에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 신청이 있으면 그 때에 비교안내 등을 수행해도 된다고 생각됨[8]

- 보험업법은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부당한 전환으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안내 등의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하거나 적어도 소멸이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임
  - 기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 중이고 앞으로 1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소멸될지 여부를 알지 못

---

5) 실제로 2019년에, 기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 가입 시점에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을 시켰음을 이유로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과징금 부과를 받은 사례도 있었음

6) 금융위원회 법령해석회신문(160663). 다만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비교안내를 기존 보험계약 소멸 시에 해도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시에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것은 아니었고,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시에 비교안내를 한 경우 이후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 시에도 다시 해야 하는 것인지를 질의한 사안이었음.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시 비교안내를 했다면 기존 보험계약 소멸 시 재차 비교안내를 할 필요는 없다고 답신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시점에서 비교안내를 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인 것이었음

7) 보험업법 제97조 제4항

8) 모집종사자가 향후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기로 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도한 사정 등이 있다면 그 자체로 부당한 전환에 해당할 것이며, 여기에서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는 모집종사자가 기존 보험계약의 향후 소멸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 정상적인 경우를 전제하고 논의함

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비교안내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한 전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

-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비교안내 등을 하지 않은 것 자체로 부당한 전환 행위라고 본다면, 이후 1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 것인지 애매해질 수 있음
  - 또한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시점에서는 기존 보험계약이 1개월 이내에 소멸될지 6개월 이내에 소멸될지 알 수 없으므로 자필서명도 받고 비교안내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되어, 보험업법에서 1개월 이내의 전환과 6개월 이내의 전환을 구분하고 있는 체계에도 맞지 않을 수 있음
- 취지만 놓고 보면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하게 기존 보험계약과 유사한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비교안내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현행 보험업법의 문언 및 체계상으로는 기존 보험계약이 유지 중인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시점에서 비교안내 등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임
  - 현행 보험업법상 승환계약 규제는 모집종사자가 '부당하게 보험계약의 전환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모집종사자에게 '보험계약 모집 시 확인 및 비교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님
  - 즉,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계약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는 적합성 원칙이나(보험업법 제95조의3), 실손의료보험계약 등을 모집하기 전에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보험업법 제95조의5)와는 규정의 내용이나 방식이 다른 것임[9)]

■ **이처럼 승환계약 규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기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 중인 경우에는 비교안내 등을 언제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고 실제로 이에 관한 제재 사례도 나오고 있으므로, 향후 법 개정 또는 유권해석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음** KiRi

9) 근본적으로는 보험업법에서 승환계약 규제를 하는 것이 ① 모집종사자가 부당하게 보험계약 전환을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② 모집종사자로 하여금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의 기존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확인하고 불필요하게 유사한 보험계약 가입을 방지하게 하도록 하려는 것인지, 그 규제 목적을 먼저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현행 보험업법은 ①과 같이 부당한 전환 유도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만약 앞으로 ②와 같이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현행 보험업법상 승환계약 규제 조항을 확대 해석하는 방법보다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적합성 원칙이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처럼 보험계약 모집 시의 확인 의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